

(앞쪽)

| | |
|--|-------------------|
| 시설 · 사업장 출입 · 검사증 | |
| 소속: 직급: 성명: 생년월일: | 사진 (2cm × 3cm) |
| 위 사람은 「하수도법」 제69조제4항에 따라 시설 · 사업장 등에 출입 · 검사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. | |
| 년 월 일 | |
| 기 관 장 명 의 직인 | |

92mm × 85mm [백상지(150g/㎡)]

(뒤쪽)

| | |
|--|---------------|
| 출입 · 검사 목적 | |
| 출입 · 검사 대상 시설 · 사업장 등 | |
| 유효기간 | 년 월 일부터 |
| | 년 월 일까지 |
| 비고 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. 2. 「하수도법」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 3.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 | |